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59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전진숙 · 오세희 · 장철민
남인순 · 김한규 · 이수진
김남희 · 김정호 · 이인영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일회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거나 초동조치를 취할 때, 피해자 보호 중심의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숙련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재차 폭력과 보복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관에 게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요구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찰의 초동조치 역량을 제고하고, 피해자 인권 중심의 수사 및 보호체계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긴급임시 조치·분리조치·피해자 통보 등 법적 보호수단을 적시에 이행함으로써 재범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제8조의4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가정폭력범죄 등에 관한 대응교육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방법·절차·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4(가정폭력범죄 등에 관</u> <u>한 대응교육 실시) ① 경찰청</u> <u>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u> <u>에 따른 경찰관에게 다음 각</u> <u>호에 따른 범죄에 신속하게 대</u> <u>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u> <u>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u> <u>시하여야 한다.</u> 1. 「<u>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특별법</u>」 제2조제3호에 <u>따른 가정폭력범죄</u> 2.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u> <u>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따 <u>른 스토킹범죄</u>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범죄</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u>방법 · 절차 · 대상 및 평가에</u> <u>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